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희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2646

발의연월일: 2023. 6. 14.

발 의 자: 김희곤 · 김형동 · 박대수

김성원 · 정동만 · 송언석

이명수 • 구자근 • 정희용

최춘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매년 여름철에 물놀이 안전사고와 이로 인한 인명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.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력 위주의 안전관리는 사각지대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능을 갖춘 드론·통신체계·조종인력 등으로 구성된 물놀이 안전관리드론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66조의13 신설).

법률 제 호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6조의13을 제66조의14로 하고, 제8장에 제66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66조의13(물놀이안전관리드론시스템의 구축·운영) ①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「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의 드론을 활용한 물놀이 안전 관리 시스템(이하 "물놀이안전관리 드론시스템"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 물놀이안전관리 드론시스템은 물놀이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드론, 통신체계, 조종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.
 -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물놀이안전관리 드론시 스템을 구축·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-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물놀이안전관리 드론시스템의 구축·운영 및 조종인력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66조의13(물놀이안전관리드론
	시스템의 구축・운영) ① 국가
	및 지방자치단체는 물놀이 안
	전관리를 위하여 「드론 활용
	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
	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의 드
	론을 활용한 물놀이 안전관리
	시스템(이하 "물놀이안전관리
	드론시스템"이라 한다)을 구축
	•운영할 수 있다.
	② 물놀이안전관리 드론시스템
	은 물놀이 안전관리에 필요한
	기능을 갖춘 드론, 통신체계,
	조종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
	하는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.
	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
	<u>방자치단체에 물놀이안전관리</u>
	<u> 드론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는</u>
	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
	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	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
	사항 외에 물놀이안전관리 드
	론시스템의 구축・운영 및 조

<u>제66조의13(재난 및 안전관리를 제66조의14(재난 및 안전관리를</u>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) (생 략)

종인력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위한 특별교부세 교부) (현행 제66조의13과 같음)